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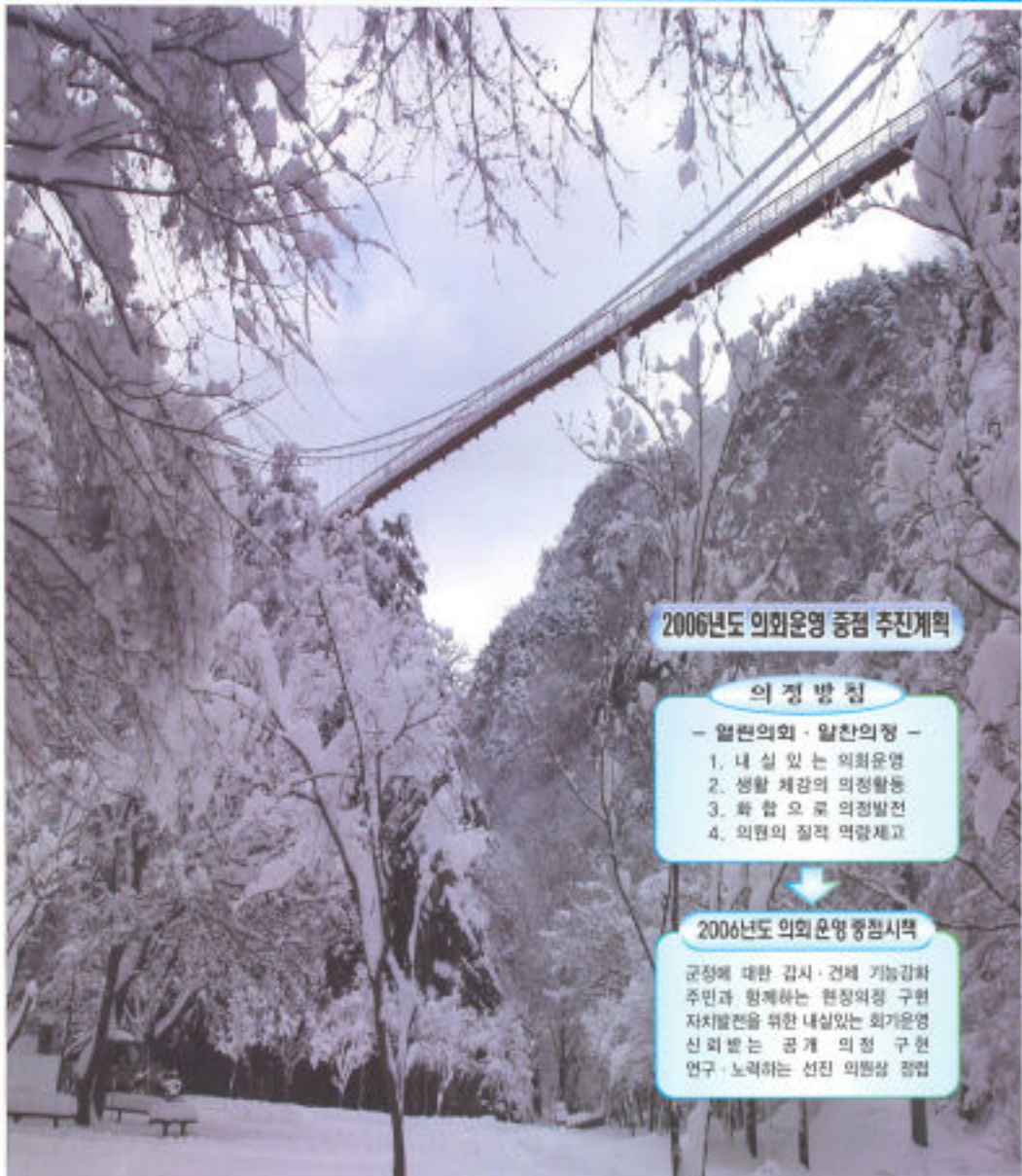
『역린의회 · 알찬의정』
순창군의회 소식지



2006년 1월 1일

제 2 호

발행처 : 전라북도 순창군의회 / 편집 : 순창군의회사무과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315-41우505-8051 / ☎ (063)650-1408, FAX 652-6782



2006년도 의회운영 중점 추진계획

의정방침

- 열린의회 · 알찬의정 -

1. 내 실 있는 의회운영
2. 생활 제감의 의정활동
3. 화 합 으 로 의정발전
4. 의원의 질적 역량제고



2006년도 의회운영행침시책

군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원정의회 구현
 자치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회기운영
 신뢰받는 공개 의정 구현
 연구·노력하는 선진 의원상 함양

의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살기좋은 순창건설을 앞당깁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 속에서 맹솔년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순창군의회에 성취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지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2005년 7월부터 펼쳐온 순창군의회 의정 활동을 여과 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의 행복과 의정 참여는 곧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순창군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군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일

순창군의회 의장 양영수

의원 현황



순창군
양영수 의장



구분면
김경섭 부의장



인계면
임용식 의원



평계면
양승홍 의원



적성면
권정남 의원



유등면
윤영신 의원



홍산면
최일관 의원



금곡면
김진상 의원



봉곡면
조상신 의원



박동면
마와똥 의원



안지면
이집영 의원

제126회 제1차 정례회 (2005.7.11~7.18)

조례안 심사

-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대통령령 제18738호(2005.03.18)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순창군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
-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2005. 01. 0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부지에 적용하던 종합부담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종합부담세」가 별도로 적용됨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학교재단소유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군세감면조례」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함



- 순창군 지역사회복지지원체계 운영조례안 (원안의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복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회의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순창군 지역사회복지지원체계 운영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 함
- 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지물의 청결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일부사업자 조항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함.

- 순창군 문화복지 운영관리조례안 (원안의결)
 - 군민의 최적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한 문화회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조례를 마련함
- 순창정류소축색유선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원안의결)
 - 순창정류소축색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효율적인 축제지원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세입·세출결산 승인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의결)



-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별 명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81,308,500	171,081,380	9,927,110
세출결산액	158,715,517	123,902,697	5,810,910
회차액	22,592,983	47,778,575	2,146,200
별 차액	35,728,000	16,083,988	94,710
삭감회차	4,510,824	5,810,814	0
계승회차	21,082,158	31,493,238	93,990
보통회차	625,642	628,894	8,055
순채회차액	7,404,125	5,194,731	3,316,286

제127회 임시회 (2005.8.10)



조례안 심사

- 순창군의회의회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1월 70,000원에서 1월 100,000원으로 개를 공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우리군 의회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함

제128회 임시회(2005.8.25~8.26)

조례안 심사



- 순창전통고추장육식 및 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제16727호)시행령(대령령 제18104호)이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조례의 법적근거 보완과 위생업소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함
-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제16727호)시행령(대령령 제18104호)이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조례의 법적근거 보완과 위생업소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함
- 순창군세강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2005년도 제정공시지가 공시일 변경 05.30~06.31일므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된 부지에 위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포감면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군세감면 조례개정으로 국민들의 부지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함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축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확충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단위사업별 정리, 지방채입 변경, 국·교보사업 추가비용 지출에 따른 군내확보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추경예산안 검토

(단위:천원)

회계항목	제2회추경 예산액	제1회추경 예산액	총합액	비율
합계	156,288,000	147,392,000	3,031,000	0.7
일반회계	144,273,000	140,571,000	3,000,000	0.8
특별회계	1,000,000	6,800,000	8,000,000	0.3
외국보조기금	29,000	10,000	3,000,000	0.3



○ 감사결과 - 수검회계

(단위:천원)

시업명	수검 예산액	계수조정 금액	수정액	
6시내시정 행정 공무원채용시험	46,300	0	46,300	0
6시내시정공무원 봉양금(도전포상 장려금)과기금	26,000	0	26,000	0
04세내 보육(보육)	1,414,498	73,000	73,000	1,487,498

→ 2005년도 교육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건)(원안의결)

- 취학예비생 증요재산상 순항장유체결 관 건립계획으로서 순항을 백산리 285-56번지의 1필지의 순항교 소유 도지에 건설 1동 1,000㎡(200명)임

제129회 임시회(2005.10.7-10.20)

→ 조례안 심사



○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 본 조례는 2005년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조례는 행정자치부 및 편파복도의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함

○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원안의결)

- 순창군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이고 안정하게 관리 운영 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개정함

○ 칠수노인 무대 및 관공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수노인 수당 지급, 건강 백세인 축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결과효익의 사회적 부가치를 조성하고 편구 제1의 정수고를 어르신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함

○ 순창군 예산관리공무원 명명조례안(원안의결)

- 한글 비애특화와 국제철혼으로 한글을 불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에 기회를 제공 하므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예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차액, 중장 등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요양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여 고령사화에 대비하여 지역 노인의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함

○ 순창군보건의료원 - 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재난재해 발생지역에 진료 및 예방접종, 병원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시 진료비 면제 혜택 부여에 질병의 조기발견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고, 재충명방급수수요발 현성의 함

○ 순창군정통고추장확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의 건(원안의결)

- 지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부류되어 2005년 10월 7일 순창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순창군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됨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원안의결)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순창군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회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사실은 타당 확대 사항으로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국정관찰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실시기간

2006년 11월 22일~11월 28일(7일간)

3. 감사 대상기간 : 27개 기관

대상기관	회계기간	비고
군민청	회계기간	회계기간
기획의과	농업기술센터	순창읍
감사실	사무과	보건의료원
회계과	공공사업	10주년
심과	관리사업소	정무개발사업소

4.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 성과수출 - 사업소 및 읍·면(순창·구림)별 주요업무 처리사항
(2004년 하반기, 2006년도)
- 2004.7 - 2005. 11월 현재 예산의 집행사항
- 2006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0회 제2차 정례회
(2005.11.18-12.20)

→ 조례안 심사

○ 순창군수원천채보조금지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차회단체의 설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효율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을 도모함

○ 순창군 학교급식 식용비 지원 조례안 (원안외결)

- 학교급식에 지원을 통해 상용기 모든 학생들이 계층 별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한 상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함

○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외결)

- 1005. 6. 30 존속기간 만료된 주무과 차장담당실을 폐지하고, 여유기구 도입과 사회복지 전담 인력증 강경지구면중요인 발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

○ 순창군지방공무원정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외결)

- 1005. 6. 30 존속기간 만료된 주무과 차장담당실을 폐지하고, 여유기구 중 주정청단 도입, 사회복지 전담인력 신규 증원을 요인이 발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

○ 순창군 결로당 지원 조례안(수정외결)

-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활적인 친대모도,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노인여가시설인 결로당 확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원안외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복지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공표안내(2006년도 보건복지부 발행) 지침에 서 정하는 데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무망부담 경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다 견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원안외결)

- 웰빙시대인 요즘을 소비자들은 먹거리를 구입시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양(量)보다는 질(質)을 중시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함.

○ 순창군 청소년상담실운영촉진일부개정조례안(원안외결)

- 청소년기본법이 전문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위원회의로 통합되어 자라 이 를 조례에 반영함



○ 순창군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외결)

- 청소년기본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령 조항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함

○ 순창군연 무로경진사업 운영촉진안(수정외결)

- 군민의 건강 증진·향상을 도모하고자 전 군민 무로경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용 통행 증진과 을 이미지 부각과 지속적인 국민 건강 권리를 위한 무로경진 관련 사항을 조 례로 제정함.

○ 2006년도 예산안 심사(수정외결)

○ 예산안 규모

(단위: 억)

회계별	수정예산안	기정예산안	증감액	비율
합 계	101,974,000	101,022,000	952,000	0.9
일반회계	144,437,000	144,085,000	352,000	1.2
특별회계	1,100,000	7,337,000	0	0



○ 총 1,519억 7,400만원중

- 농촌 복합 노인 복지단지 부지매입 5억 삭감,
- 징부위로 재해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 삭감,
- 친환경 실천농가 해외 비교견학 2,350만원 삭감,
-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5천만원 삭감
- 연소매지 하천변 육모장 건설 1억 삭감
총 4억 9,500만원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수정외결)

○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억)

회계별	수정예산안	기정예산안	증감액	비율
합 계	157,420,000	156,153,000	1,267,000	15
일반회계	148,012,000	148,104,000	78,000	0.1
특별회계	6,808,000	6,049,000	759,000	12.1

○ 총 1,574억 2천만원중

- 유산 증원비를 집행료 및 안길 절제사업 1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

○ 기타 안건 심사

○ 군유재산수익상대부개혁안(원안외결)

-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타지역의 연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대학원생기 를 조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유한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지할 자치법 제95호 제3항, 지방재정결산행방 88호 2항,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1조 중 및 최첨단인재육성사업에 관한 조례 제6호 제1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미함

○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외결)

- 공제면 주민공동복지센터 부지매입 변경계획
- 안동내가 원미리원 부지매입계획
- 북동정산 체육공원 국유지 매입계획

○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외결)

- 금년 제출된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7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이며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심사 전 회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
- 친환경 농업관련 내 화살을 선속계획
- 순창 농업상담소 부지매입·선속계획
- 규과 들소리 정수관 건설계획
- 의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피크낙장 건축계획
- 순창 체육장을 농공단지 조성계획
- 순창향토문화미개량생산지, 부지매입 계획

뜻한 고추, 복분자, 원주권, 설리강을 중심으로 한 평남축에서는 미과과 배, 보드, 매실, 밤 씨앗 등 각종 특용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농장은 맛과 멋의 고품질에서 오는 21세기 행방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통고추장을 비롯한 원장, 향장, 정국장, 간장 등 말효식품 산업의 대거로서 근년부터는 장류 제품의 원료인 병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300평당 30만원의 장리금을 평균 최초로 지급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경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농산물 검사, 품질양상 등 제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남원출장소 직원이 순창까지 출장을 해야 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원해 40km에 달하는 남원출장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농후지역의 피해의식을 할지언정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출장소의 작은 인력과 남원, 임실, 순창의 넓은 관할 구역은 대를 잇는 업무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순창군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피할래도 보아달고 보살핌이여 불행적재스의 해악을 상대적으로 상심 단원으로써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순창군의회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순찰근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이라 순창군민의 뜻과 양해를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설치(부설)를 강력히 건의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10

순창군의회 의원 임종

☞ 발송처 : 행정자치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출장소, 미진해 국회의원

시군자치구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 제127회 임시회 -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필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이해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허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질으로 인한 주요임을 연속의 선명하여 순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 1. 현재의 중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10

순창군의회 의원 임종

☞ 발송처 : 청와대, 국회의원, 영남우로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여당내 국회의원

지방도 729호선(순창-정읍) 국가직권지방도 승격 건의문 채택

- 제129회 임시회 -

존경하는 건청교류부장님!
 평소 국도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군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순창지역 발전과 도로를 확충사업에 이입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3만여 순창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말 드립니다

우리 순창군은 자리적으로 정라북도의 최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무려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연시도 밀약한 자발적으로 도로망이나 가변시설이 아 지역에 대해 취약한 실정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이나 경제 활성 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도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순창-정읍간 지방도 729호선을 국가직권 지방도 승격 및 도로개설을 수차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로 승격조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호소하고 말어온 우리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강한 미련과 소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무려 순창군 회회 의원일정은 순창군민을 대표하여 지방도 729호선인 순창-정읍간 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도로를 개설하여 골 쪼들 길처럼 건의 하오니 3번에 군민의 불편 해소와 지어 말한을 위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729호선은 순창-정읍-서흥을 잇는 순창군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중요한 도로로서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을 전국 1일 생활권 시대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도로 총연장 32.4Km 구간중 6.6Km는 기 개설·포장 되어 있으나 순창군 구명면 금정리에서 정읍시 산내면 중금리까지 5.9Km 구간은 개설조차 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불가능 한 상태로 그동안 전라북도에도 수차례 걸쳐 개설 요청을 함바 있으나 재정이 허락이 않아 착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루 약 12회를 운행하는 순창 ↔ 서울간 퍼우코선을 있어셔도 본 도로 비개설로 국도 30호를 이용 경유시 협로를 경유함으로써 30Km를 연장 운행하는 결과로 3번에 순창 군민의 입장에서서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

황입니다.

대유이 행하 이음중인 순창 ↔ 서울간 퍼우코를 주변여건을 보 면 도로변을 따라 육안으로 위치해 있어 사시사설 안개극심 지역 의 겨울철에는 도로가 광빙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후지역민의 소 회의식을 예시하는 차원과 50년 동안이나 길방해는 순창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729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 시 개설 구간인 순창군 구명면에서 정읍시 산내면 까지 5.9Km의 구간을 조속히 개설하여 골 쪼들 군민의 이쁨으로 건의하오니 재 상을 아끼미이 있었지만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10. 30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발송처 : 건설교통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제130회 제2차 임시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2005.11.22~11.28(7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회 구성 현황
- 위 원 장 : 이길영(의원)
- 간 사 : 조성선(의원)
- 위 원 : 김경섭, 임용석, 양승준, 권경남, 유영선, 최태환, 김진섭, 이희환

○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 56건
- 예산 부기변경 집행은 시급성과 명규 를 준수하여 처리하였다고 하지만 당 초 예산 편성시 보다 심중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 성시 철저한 검토가 요망
- 청주인구 늘리기 운동에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전 군민이 나서고 있는 상황 에서 관내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자료가 허위한 유관 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군에서 기준을 정하여 본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기반을 다짐으 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 검토가 요망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종 시 업계회를 보면 불일정화됨, 불우이웃 돕기, 견학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과 정에서 지원런지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 해서는 관변발원에 의한 과잉한 개인으 만 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 신청시 심사내용과 정 산내용이 상호 다르게 처리되는 경유가 있으며, 사업계획 내용 중 자비, 홍보비 등 결산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므로 조려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무명 하게 집행 및 정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에서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요망
- 순창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일부가 년중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 회가 13회가 있으므로 주관부처에서는 실행조사를 통하여 통제할 또는 활성화 등 활발적인 재정이 요구
- 재무과에서 정수물량배정 승인시 실과에 따라 동일 기층에 대하여 일부 선확사한 는 있었지만 가격의 편차가 많이 나고 있으 므로 출납부서에서 동일 기층 - 호간이 관련 부재간 정수물량 배정 승인시 통행 을 고려하여 승인하기 바람
- 농촌지원개발사업은 주민일자리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요망되나, 지원대상자 선정 등 중요 인하여 농가에서 시급한 신청 등 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관부서 에서 실행을 파악하여 면밀이 발생처 없 도록 조치 바람
- 생활사업을 통한 골이순진 도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방의정 수리사업 수혜 자 중 일부 가구에 누수 사해 등의 민원 이 있으므로 실행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공사 및 향후 유사한 사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로 화기 바람

- 순창읍 녹십리 목현아스콘공장, 캐미콘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주민의 생업이나 일상생활, 환경 등에 피해 가 가지 않도록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가 이견수렴을 통한 민원해결을 해야 할 것 이나 행정의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 단되므로 향후 행정지도 및 단속을 지속 하도록 추진하여 주민과 업체가 상호 피 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다음,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 운 영하고 있는 생농촌육성기금 용자금 총 35억여원이 채입되어 있는데 계정금용권에 서 활용하고 있는 채입회보 방법 등 다각 적인 방법을 강구 시행 해으로서 매출을 방지 못하는 농가가 상당한인 피해를 보 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원지 청산금 총 대지급 금액에 1223건에 2억 2,300만원으로 읍면에서 35건에 여러 용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채취수입 등으로 밀감 관리운영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05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발생 지역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복구 복구금 하고 용역처 못한 사업장을 실제 조사를 철저이 하여 2006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동계면에서 행정업무를 이용한 유료사업 없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그 실행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출감 및 농가 소득증대 등 실증 가능 한, 정책성을 연구 검토하여 농가에 확 대 보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군청신 군민공원 관공원에 대하여 입찰 보와 준공비용 밀도 정수에 따른 관공역 의 불발 민원이 발생 등으로 개선대책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순창 전통고추장 핵심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제7조의 의하여 전통고추장 제조 지역제한과 관련된 근거인, 전라북도 고시에 관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제조 가능지역을 순창군 일원에서 가능토록 하는 누구나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추진하기 바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56건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하여 보고토록 요구함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제129회 임시회 -

○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책임위원회 조사결과

-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커다란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들은 보편·시정 요구하는 방향이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고추 집단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우수한 사례에도 군정시책과 연계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에 미흡한 점과 유용 비생물 자원과 같은 농가자원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내용, 효과 등에 대한 농가교육, 민용기 확산방법 연구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조사대상사업은 주로 2006년도에 시공된 사업으로 2006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태조사활동 중 의문어 있는 사업이 다 다음 추진되어 민원제기를 받게끔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당일 실태조사 장소를 선택하여 조사활동을 실시 하였음
- 특히 지난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예비타당 투입후에 할 만한 사업성을 요하는 사업이 없는지와 예비비 투입의 적정성 주민의 안전성·편의성 및 당초 시설물들의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호우시 다시 재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시공과 통정기 이전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음
- 또한 조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등 민원발생 사업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재시공 촉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

으며, 주변들로부터 호평받고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하였음.

- 군별 실시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은 11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고흥산 산림복합 조성사업



관공작물 파부와 지면을 조제해 한 원목 결집물 사용을 고흥산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비법적인 사업이라 판단되며, 기한내 공사가 마무리 된다며 가을 단풍힐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는 수년 사업이라 판단됨

• 두 번째, 농산물 신지유동센터 설치사업



담촌 예산이 1149백만원에서 일부조정되어 921백만원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건물 규모가 축소·신축되었으므로 여기에 설치할 신별기 등 기계류 또한 별명 해서 신속진행에 맞게 축소·조정되어야 하나 담촌 규모로 구입함으로써 임상별기와 같은 큰 기계를 설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 변경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까 바라며, 민선별 장소 설치에 위해서는 국가예산 최대한 확보하여 보완하기 바람. 또한 관련 조례 제정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임

• 세 번째, 방산 수해복구 사업



2006년 8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로 투입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나 현지면 방산지역의 수해복구사업 3개소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급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 사용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 네 번째, 회교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의정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 효과에 미비하다고 판단 (감사를 감사한 바 미천한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에서 시공할 의의공할 진입로를 포함 맞춰 우기 포장(아스콘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2005. 8월에 준공처리된 한 것은 도로의 대구성을 약화시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염안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본 도로는 영주 인근 과천마을까지 직결될 것을 감안할 때 표준 도로유지공사를 추진하여 미흡, 철저한살이 없는 완벽한 도로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람

• 다섯 번째, 유용미생물(BM)생산 지원사업



유용미생물(BM) 농가보급과 관련하여 농가들이 차년도에 활용할 BM을 전년도에 과다하게 공급받아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BM에 대한 사용·보관방법을 농가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기 처리해 BM 사용후 민용기 정량 수거를 위하여 수해로부터 선급으로 방지할 것을 예치후 유기 분산시 예제금을 확충해 주는 등 유기제거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요망

○결론으로 2005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각급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하고 부실 부당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우리 순창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

운영 기본

○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5.11.18)

운영질문 : 마와방의원



대한민국 1호로 손꼽히며 정유특구가 지정되면서 농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발맞춰 군수님과 행정에서 장류의 고장인 순창군 관내 농지에 활용을 위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장려했었는데 순창군 장류업계에서 1년에서

쓰는 용의 수량이 얼마이며, 중간마찰연 유통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불구하고 알뜰살림들이 주는 표시세보다 더 차게 활용을 배양하고 있으며 수확량의 30%정도 밖에 책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군의 농지에 보습 다 상어도 부족하다면 품은 어디에서 구입해 오고 있으며 표시세가 kg당 3,500원에서 50장이 들어와 농민들도 안심하고 콩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표시세가 지금보다 많을테 차이를 보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 장인영 군수

- 장류제조업체에서 소비하고 있는 쌀은 약 1,20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 300t 정도는 우리 순창산 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비난부터는 금년과는 달리 일반 재배농가와 집단 재배농가의 소득 보정금에 차이를 두어서 일반재배 농가는 금년과 같이 30% 상당 약 20만원을 지원하고, 집단 재배농가는 여러 가지 분계를 봐야 되고 또 기업의 규모도 있기 때문에 300명당 20만원을 좀 더 지원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재배농가는 관내 장류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분 자유발언

○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5.8.26)



5분발언 : 임용석 의원

순창 소방파출소 신축지원에 따른 소방마술소 부지 확보 및 군수의 의지는?

답변 : 장인영 군수

- 부지 3,500평과 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입 추진중이며 매입이 완료되면 소방본부 파출소 부지로 요구된 필요 면적을 분할해서 군에서 전라북도로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임

○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5.10.20)

5분발언 : 임용석 의원

-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사1촌운동 등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

는 사례으로 생각되는 마 순창군 역점시책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 : 장인영 군수

-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풍주소재 추석화사 영광포교와 구림면 산태마을을 비롯하여 총 43개 마을에서 활발히 교류 중이며, 농업기반공사와 농업, 행정어 적극 협조하여 청정환경, 주택안정, 친환경 농산물의 강령을 수립할 수 있도록 1사1촌운동 등 순창군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2006년도 의회 운영계획

상반기

월	의정활동 주요 내용	기간
1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31회 임시회 - 2006년경주요업무계획보고공청회 ○ 기타 일반안건 심사 ○ 봉우식실 및 소화계측관 위탁운영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32회 임시회 - 2006년도 성과양궁주요업무계획보고공회, 3천원천 ○ 읍·면 마을순회 의정보고 개최(의정별 추진) ○ 의원간담회 개최 ○ 읍·면 마을 순회 의정보고 개최(의원별 추진)	1월
2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33회 임시회 - 조례를 일반안건	2월
3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34회 임시회 - 2006년경주요업무계획 심의토의	3월
4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선거연 5,341	4월
5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35회 임시회 - 제135회 제2차 공회회 ○ 제135회 임시회 - 제135회 제2차 공회회	5월
6월	○ 제135회 제2차 공회회 ○ 제135회 제3차 공회회 ○ 제135회 제4차 공회회 ○ 제135회 제5차 공회회 ○ 제135회 제6차 공회회 ○ 제135회 제7차 공회회 ○ 제135회 제8차 공회회 ○ 제135회 제9차 공회회 ○ 제135회 제10차 공회회 ○ 제135회 제11차 공회회 ○ 제135회 제12차 공회회 ○ 제135회 제13차 공회회 ○ 제135회 제14차 공회회 ○ 제135회 제15차 공회회 ○ 제135회 제16차 공회회 ○ 제135회 제17차 공회회 ○ 제135회 제18차 공회회 ○ 제135회 제19차 공회회 ○ 제135회 제20차 공회회 ○ 제135회 제21차 공회회 ○ 제135회 제22차 공회회 ○ 제135회 제23차 공회회 ○ 제135회 제24차 공회회 ○ 제135회 제25차 공회회 ○ 제135회 제26차 공회회 ○ 제135회 제27차 공회회 ○ 제135회 제28차 공회회 ○ 제135회 제29차 공회회 ○ 제135회 제30차 공회회	6월

하반기

월	의정활동 주요 내용	기간
7월	○ 제5차 의회 개원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36회 임시회 - 의정단 선거 및 개원식 ○ 제137회 제1차 공회회 - 2006년경주요업무계획 심의 - 2006년도 하반기 경주요업무계획 청취 ○ 기타 일반안건	7월 8월
8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의원연수회 참여(국회등 방문연수기회 열소) ○ 제138회 임시회 - 2006년도 제1차 추경 및 일반안건	8월
9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선진의회 및 시설 벤치마킹(자료수집활동)	9월
10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39회 임시회 - 2006년경주요업무계획심사	10월
11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의원 워크샵 개최 ○ 제140회 제2차 공회회 - 2007년도 예산안, 각종 기금 - 2006년도 추경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 기타 일반안건	11월 12월

의안별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인제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절차안에 대하여



Q 한글공부방 운영이 최종연을 비롯한 몇 개소에 서는 지원없이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체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가족회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교육 희망자들 다 공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의 경우 합석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한글공부방 운영주체 선정시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로 선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무관청의 의견은?

A 기존 한글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으므로 군 지원 한글공부방 운영단체 선정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계

농촌민집정례사업과 관련하여



Q 농촌민집정례 사업 자료가 분포 뿐만 아니라 같은 빈지비 건물 또는 생활터까지 정밀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하여 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할 용 의가 있는지?

A 농촌민집정례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

유사 행사의 일원화 강조



Q 순창군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예산낭비라는 주민이론이 있어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 관련단체의 협정이 협의하여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 시명할 의향이 있는지?

A 기존의 행사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단일화하여 전군민 행사로 통합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승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Q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1명만 예산에 개성되었으나 전체 읍면에 대상자를 발굴 시명 계획은 없는가?

A 당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1명만 신청했 으므로 금번 1명에 대해 지원하고 앞으로 많은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삼

제2장류 농공단지 추진사업은 철저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Q 제2장류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제1장류농공 단지 기업일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장류농공단지조성을 조성한다는 것은 철저히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제1장류농공단지 운영 상황을 평가며 제2장류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A 순창군의 낙후원인이 면목에 사정대미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면목에 적극대응하고 가일층이 우리지역에 참여해서 파용 놓고 기업유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유증을 위한 사업으로 필수 적인 사업임.

김과

과원캐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Q 과수 경영의 재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과원캐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캐빈 내의 여성공무원 복지증진 차원미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순창군의 이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지?

A 행정지도 - 감독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본사업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박익

순창군 여성공무원 복지에 대하여



Q 국회에서 남여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내의 여성공무원 복지증진 차원미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순창군의 이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지?

A 순창군 재조형사가 완료되면 여성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구성하고 있음.

박종

영세농가 보호를 위하여



Q 저차량생산기반 확충사업, 한우 고급육출하 보 장금지원 및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을 보면 다 무 사육농가나 영세농가나 집중적으로 지원하 고 있는데 영세농가로서 어려운 농가들 더욱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실행 과추진의 의견은?

A 각종 사업지원에 대한 효유를 철저히 하여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농가 고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지

신활력사업비에 대하여



Q 장류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및 장류 활성화 사업과 병, 고추 등 장류원료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집중 투자 되고 있어 주민들모 부부 관중 지원하고 있다고 떠벌어 있는데 신활력 사업비를 장류분야 사업 이외에 비농분야에 과목을 결합하여 민간자본으로 예산지출 가능할지 그 리고 2006년도 부터는 다수 주민에게 실증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

A 신활력사업에 매년 30여억원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 본보조금도 일부 기 예산에 개성되어 있으며, 신활력사업 이외 의 차분야에 과목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관계는 본 사업결합 확충원 상해이므로 불가능하며 2006년부터는 보다 더 다수 군 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Q 각종 사업비가 사업완료 후 막대한 예산이 잔액 으로 발생하여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 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 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불용예산은 사전에 판단하여 결산 추경시 삭감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 고해서 지역발전의 제지증진에 무익할 수 있도 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A 일후 예산잔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 잔액이 최소화 하는 물론 불용잔액은 결산추경시 삭감하며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제도 운영 안내

군정 또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살리기 위한 의정 모니터제도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의정제출시기 : 년중 (상시)

② 의정제출방법 : 군의회 직접방문 또는 서신, 전화활동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 의회사무과 ☎ 890-14080

③ 의정제출 대상

- 군정주요사업 및 지역현안 문제 등 주민 주요여론
- 군민 생활민원 등 불만사항 제보
- 기타 의정활동에 참고사항 등

④ 의정제출시 유의사항

-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군정 및 의정운영 정반에 지역내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진정한 비판, 질의, 건의, 제안, 제언 하신
- 동결된 무면밀서 유휴되는 의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 특정 개인을 타락하는 태어나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의견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대의』를 지켜야 하는 『공인』이다

— 고향친목회공동대표회장 순창군의회장 양삼철 —

지방자치의 수호공작은 주민들이 주민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국회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역사적으로 통치사적으로 정당공천의 의미를 책임정치와 구별이라는 배서 찾고 있지만 그동안 발상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을 보면 출당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고 나선 것을 보지 못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해온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았어있음에도 역으로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 확대한 것은 여야의 당리당략이라는 커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하락 보지 못했다. 17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폄하시켰다는 모범을 배우려는 스스로 멋대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 지방정치권은 정치권대의 의회청수 감독반대를 핵심으로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간 침범한 태풍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조례 부결처리 등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래

지방의원 자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움직임들 중 정치인들의 밧그로 행하기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무국충정의 발로로 인정

확고 있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좀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초의원 누구도 음급제에는 반대하지 않고 의원경선 축소에만 반대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가혹권 수호자임이라고 비판받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후원은 공인으로서 신뢰를 채우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데 역할을 다 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싶다.

의 회 방 청 안 내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는 공정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표기중에는 언제나지 본회의 또는 특별 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명칭을 위하여 군민은 의회사무과로 오셔서 명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의회에서는 군민여러분의 의견 말씀을 전심으로 환영 합니다.

TEL 0630-660-1409 FAX 0630653-6782

의회소식지 원고모집

순창군의회 소식지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의정지입니다. 소식지에 게재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1) 분 야 : 의정발원방향, 개선사항, 시, 시조, 수필, 제언 등

2) 제출방법 : 원고지 또는 A4용지를 이용해 자유롭게 작성 (300자 원고지 5매이내)

※ 제출시 주소·성명·사진·연락전화번호, 우편·방문·FAX등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합니다.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제출처 : 우0085-806 전차 순창군 - 읍 순화리 315-4

순창군의회 의회소식지 담당자 앞